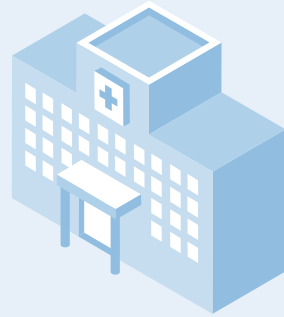


오케이! 치매 공공후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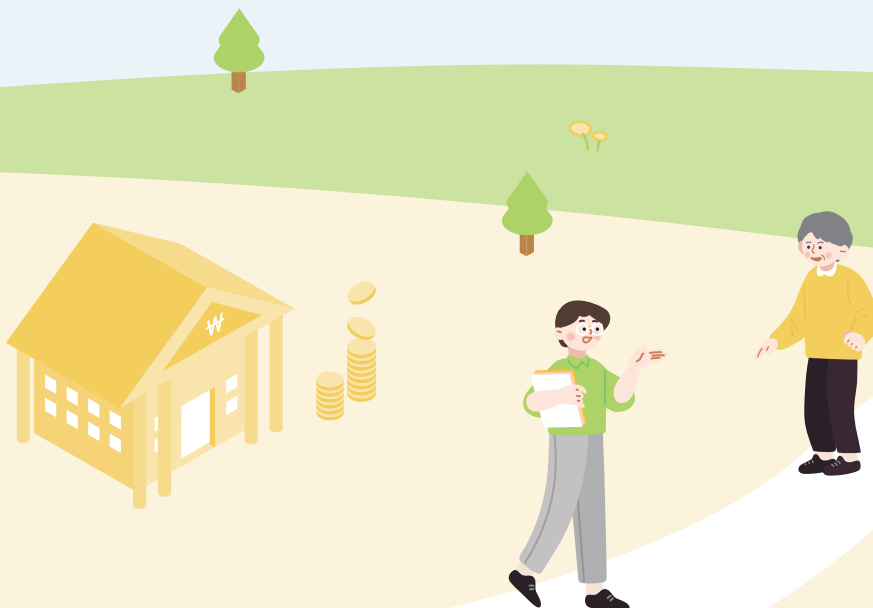
OK!





2018년 9월부터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독거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들의 존엄성 보장 및 인권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란?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 ① 치매노인(피후견인)에게 후견인을 연계하고,
- ② 후견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며,
- ③ 후견인의 활동도 관리하고,
- ④ 관련 비용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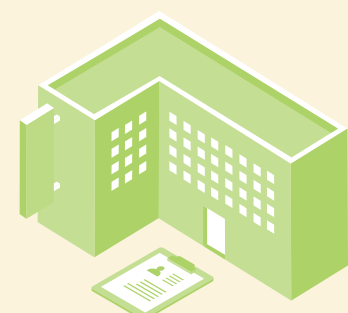
※ 관련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민법 등

지원 대상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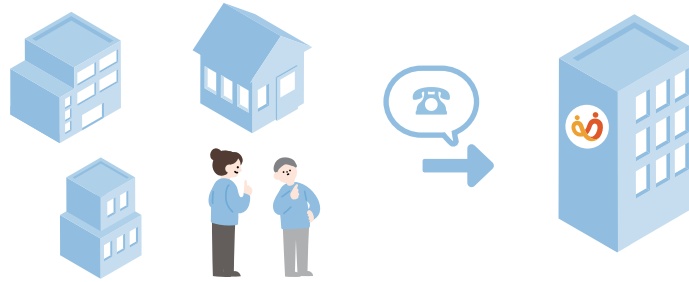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후견인 (치매노인) 발굴

시청이나 주민센터 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치매노인 중 가족이 없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웃 중 홀로 사는 치매노인을 알게 된 경우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요양시설, 이웃

치매안심센터

지원 내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 원, 2인 월 30만 원, 3인 월 40만 원)

누가 치매 공공후견인을 할 수 있나요?

- 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 ② 「민법」 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형 집행 중인 자 등)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치매공공후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으로 활동 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받아야 하고**, 피후견인을 대신해서 관공서 방문, 은행 업무 등을 해야 하므로 **평일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치매공공후견인 선발부터 활동시작까지!



① 후견인 후보자 모집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후견인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③ 위촉장 수여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견인 후보자를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로 위촉합니다.



② 양성교육 이수

선발된 후견인 후보자는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합니다.



④ 후견인 후보자 추천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치매노인이 발생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요청하면,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후견인 후보자를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추천합니다.



⑤ 후견인 선정

해당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 선정회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치매노인과 후견인 후보자를 연결합니다.



⑦ 후견인 활동

치매공공후견인은 심판청구 확정 후 3년 동안 치매노인(피후견인)의 후견인으로 활동하며, 후견감독인(해당 치매안심센터)의 감독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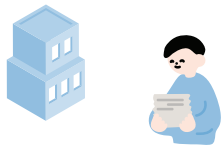
⑥ 후견심판 결정

지방자치단체장(해당 치매안심센터)은 치매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가정법원은 심리를 통해 후견 결정을 합니다.

치매공공후견인은 어떤 일을 할까요?

치매노인(피후견인)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의사를 지원할 후견인을 결정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치매공공후견인은 법원에서 허가한 범위 안에서 피후견인의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 또는 대리합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②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예) 의료서비스: 진료, 검사 등 가능

※ 침습적 의료행위: 수술 등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 제외



③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예) 임대차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시설입소(피후견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 지원 등



④ 일상생활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예) 생활용품 구입, 수급비 관리 등 은행관련 업무



⑤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예)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⑥ 후견감독인에게 정기보고서 제출

※ 기타 법원의 후견 결정에 따른 사무 및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

후견인 권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치매공공후견인은 아래와 같이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치매노인(피후견인)의 후견인으로 기재되며, 법원에서 허가한 범위 안에서 피후견인의 업무를 지원 또는 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 사건본인은 피후견인입니다.

후견 등기사항증명서(특정후견)

등기고유번호 0003-██████████008

【사건본인】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사항번호	구분	내용
1	후견등기기록작성	[성명] 김 ██████ [성별] 여 [출생연월일] 19 ██████ 일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 [등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년 2월 7일 접수 ██████

등기일련번호 0003-██████████008-001

【특정후견사항】		
(후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용
1	특정후견	[심판법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사건의표시] 2019-██████████-특정후견의 심판 [재판확정일] 2020년 ██████ 일 [등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년 2월 7일 접수 ██████
(후견인에 관한 사항)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용
1	특정후견인선임	[성명] 김 ██████ [주민등록번호] ██████-██████5 [주소또는사무소] 경기도 ██████ [대리권등록목] 2020특정 ██████ [등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년 2월 7일 접수 ██████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용
1	특정후견감독인선임	[성명] 안성시

발행번호 87-██████████-36

발급확인번호 0-██████0-08L4

1 / 4

발행일시 2020/02/20 13:18:37

-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앞쪽(예시) -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뒤쪽 (후견 기간 및 권한 범위 명시)

아래와 같이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업무(사무 및 대리권)가 명시됩니다.

대리권등 목록 2020특정○○○

I. 특정후견에 관한 사항

특정후견의 기간

· 3년

특정후견 사무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
-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지원
- 거소관련 사무지원
- 공법상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지원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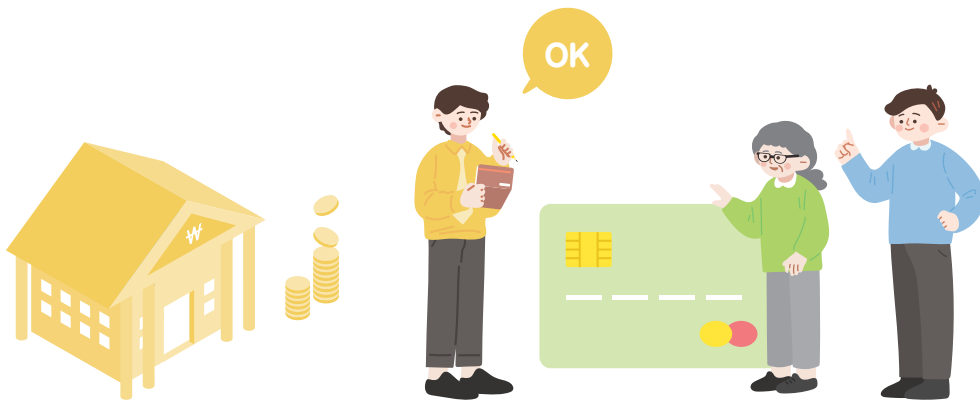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신청, 수령, 변경, 해지 등)에 관한 대리권
- 의료서비스 신청 및 이용계약 체결(병의원 등 진단, 치료, 처방, 의료기록 신청 등)에 대한 대리권
- 사건본인 거소 관련 임대차계약, 요양시설 입소계약 등 각종 계약 체결 대리권
- 사회보장수급비 등 일상생활비 관리를 위한 은행업무(예금계좌 개설, 계좌이체,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예금 인출, 보험금/적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
- 일상생활용품 구매 및 서비스 체결 관련 대리권
- 일반 공법상 신청행위(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열람 및 관련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신청행위 등)의 대리권
- 치료,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 관리 및 안전한 지출을 보장할 수 있는 신탁계약 체결 대리권

- 치매공공후견인의 대리권(예시) -

※ 치매공공후견인의 **대리권 예시**이며,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후견인이 소지한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치매공공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소지하고 치매노인(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곳에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장소** 은행, 금융기관에서
- 내용**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각종 은행업무
- 예시** 예금계좌 개설, 계좌이체, 현금/체크카드 발급, 예금인출 등



- 장소** 관공서에서
- 내용**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각종 신청업무
- 예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주민등록등본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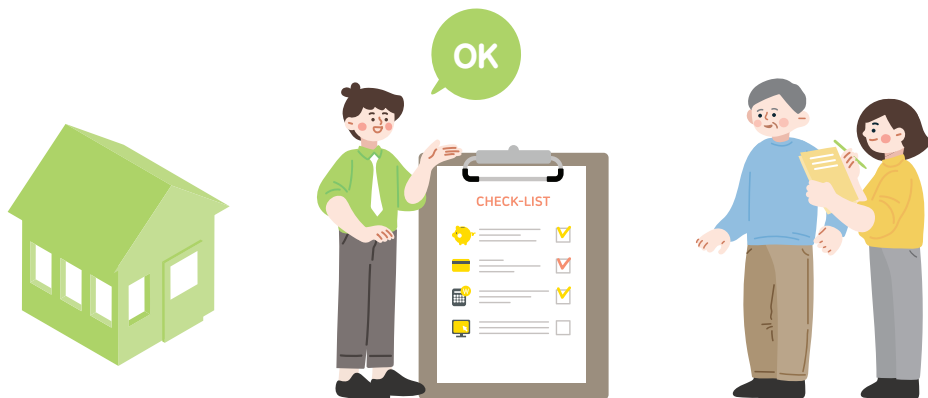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장소 병원에서

내용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의료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 관련 업무

예시 병·의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계약체결 및 해지, 비용지급 등



장소 집, 요양시설

내용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임대차 계약관련 또는 요양시설 입소 등 권한이 명시된 경우

예시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신규계약, 요양원 등 시설입소 계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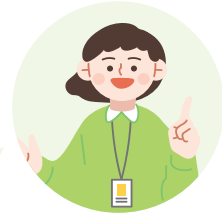
자주 묻는 질문 Q&A



치매공공후견인은 치매노인의 생활전반(청소, 식사준비 등)을 관리해주는 사람인가요?

치매공공후견인은 **치매노인(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및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이며, 피후견인 주거지 청소, 피후견인에 대한 식사 제공, 투약 관리 등은 치매공공후견인의 업무가 아닙니다.

NO!



치매공공후견인은 위임장 없이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피후견인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일반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기재된 경우, **치매공공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소지하고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피후견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K!





홀로 계신 어르신이 치매에 걸린 경우!
어르신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치매공공후견인이
홀로 계시는 치매어르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치매공공후견 상담문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경기도광역치매센터(031-271-7036)
시·군·구치매안심센터로 연락주세요!